

제 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2019. 06.

대 회 집 행 위 원 회

【 문제 】

- 주식회사 자유(원고1)와 대표이사 권대표(원고2)는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 지부 자유지회의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인 나투쟁(피고1), 정명량(피고2), 이길상(피고3), 조영리(피고4), 김투철(피고5), 박사무(피고6), 송원조(피고7), 권위로(피고8), 윤사회(피고9)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불법과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분은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들 또는 피고들을 대리하게 될 변호사다.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사실관계는 3-7쪽 [사실관계]와 같고, 이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들 또는 피고들은 8쪽 이하의 첨부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희망 소속 변호사인 여러분을 찾아와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 여러분은 다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원고 또는 피고 중 일방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전제로 할 것
 2. 전 항에 따라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각각 작성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원인, 항변, 법률상 주장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요건과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는 대법원 규칙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여 15장 이내로 작성하되, 대회규정 “11. 서면 작성 방법” 을 준수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의 당사자표시는 이름만을 기재할 것
 - 주어진 [사실관계] 외 가정적 사실관계를 상상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할 것
- 제출하는 소장 또는 답변서의 변호사 이름은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영국” 으로 기재하되, 그 성명 옆에 괄호로 참가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하고,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019가합1789 손해배상(기)”, 서면 작성일자는 “2019. 6. 30.” 로 할 것
-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대회연도-경연단계-지위-참가번호’ 순으로 붙일 것(예: 2019-서-피고-5001)
-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2019. 7. 8. 월요일 18:00)

[사실관계]

- (주)자유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약 1,5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국내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이하 ‘제조산업노조’라 함)은 전국의 제조산업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노동조합이고, (주)자유에 소속되어 있는 1,000명의 조합원들은 제조산업노조 울산지부 자유지회(이하 “자유지회”라고 함)에 편제되어 있다.
- 한편 (주)자유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해외 생산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약 600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하였다. 현재 약 100명의 직원들은 무급휴직 중이다.
- (주)자유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대표는 자신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한 것에 염려를 느껴 자신의 지분을 높이기로 마음 먹고,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의 명목으로 (주)자유를 존속법인인 (주)자유홀딩스와 신설법인 (주)신자유로 인적분할한 후 (주)신자유의 분할신주를 (주)자유홀딩스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구조변동을 추진하였다.
- (주)자유는 2017. 6. 30. 공지문을 통해서 회사분할계획을 사내외에 발표하였고, 8. 25. 자유지회 임원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유지회는 8. 28. (주)자유에 분할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주)자유는 9. 1.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
- (주)자유 이사회는 2018. 1. 15. 회사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고 함)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에는 종래 (주)자유

가 영위하던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외 판매 사업부문은 존속법인인 (주)자유홀딩스가 계속 영위하고, 자동차 부품의 제조 사업부문은 신설법인인 (주)신자유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로 이전할 재산의 내용으로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자유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계획서에는 주주총회 예정일이 2018년 3월 14일, 분할기일은 2018년 4월 25일, 분할등기 예정일은 2018년 5월 1일로 되어 있었다. (주)자유는 분할 직후까지 분할계획서를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 자유지회는 소식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을 추진하면서 부품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를 신설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승계에 대한 확약도 없다면서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전·홍보하였다.

○ 제조산업노조는 2018. 1. 21. 부터 4차례에 걸쳐 (주)자유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주)자유는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산업노조는 2018. 2. 14.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3.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제조산업노조는 2018. 2. 27. 자유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재적 조합원 86.5%가 찬성하였다. 자유지회는 제조산업노조 규약 및 자유지회 규칙에 따라 2018. 3. 1.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함)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하였다.

- 자유지회 지회장 나투쟁, 조직부장 정명량 등 100여 명은 2018. 3. 3. 07:00경부터 2018. 3. 5. 15:0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00 소재 자동차 부품 1공장(이하 “1공장” 이라고 함)의 ‘등속조인트’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같은 기간 (주)자유의 ‘등속조인트’ 생산이 중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점거농성” 라고 함).
- 제조산업노조 조직국장 이길상은 이 사건 점거농성을 응원하기 위하여 2018. 3. 3. 13:00경 및 3. 4. 13:00경 두 차례에 걸쳐 1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면서 1공장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길상은 2018. 3. 4. 18:00경 자유지회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점거농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자유지회 부지회장 조영리와 조합원 김투철은 2018. 3. 6. 06:00경부터 1공장에 설치된 높이 15m 가량의 송전철탑 중간 대기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치고 “단 한명도 못 보낸다. 회사분할 철회”, “노동자들 등골 빼먹는 악덕자본 권대표는 할복하라” 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2018. 3. 15. 14:00경까지 점거농성을 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위 조영리와 김투철의 안전을 위해 송전철탑 전원을 차단하였다.
- 자유지회 사무장 박사무는 송전철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송전철탑 농성기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랜턴, 불펜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자유지회 법규부장 송원조는 조영리와 김투철에게 식사, 생수 등의 음식물을 공급하였고, 자유지회 전지회장 권위로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0분간 조영리와 김투철을 위로하였으며, 자유지회 연대부장 윤사회는 송전철탑 아래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조영리와 김투철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지 싸우자’ 는 등의 말을 하고, (주)자유 대표이사 권대표의 사진에 신발을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유지회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분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자유지회 조합원들은 모두 쟁대위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를 앞둔 2018. 3. 12. ~ 14. 각 8시간씩의 파업에 참여하여 위 기간 1공장의 생산이 전면중단되었다.

○ 검찰은 2018. 6. 나투쟁, 정명량, 이길상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나투쟁과 정명량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길상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나투쟁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명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길상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 검찰은 2018. 10. 박사무, 송원조, 권위로, 윤사회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영리와 김투철의 공소사실은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한편 (주)자유는 자유지회의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농성에 따라 생산이 중단된 3일 동안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3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마찬가지로 2018. 3. 12. ~ 14. 까지 3일간의

과업으로 인해 3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자유의 ‘등속 조인트’ 재고율은 통상적으로 115~120% 사이였고, 2018. 3. 경 재고율은 130%였다.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문서번호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2017-125
시행일자 : 2017년 8월 28일
수 신 : 주식회사 자유 대표이사
참 조 : 주식회사 자유 노무담당
제 목 : (주)신자유 분할신설 관련 질의사항

1. 귀 회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사가 계획하는 회사분할 시점은 언제인가.
3.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회사분할은 인적 분할인가, 물적 분할인가.
4. 회사는 신설법인에 자동차부품 및 지원부서라고 하였는데,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인원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5. 단체협약 제35조에 명시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 승계 여부는.
6. 신설법인에서의 근로계약 이전 여부, 퇴직금 및 근속기간 인정 여부는.
7.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데, 회사분할을 해야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가.
8. 회사를 분할하면 노무관리, 인력관리, 구매, 재무, 회계 등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등 오히려 이중, 삼중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분할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9. 이미 지난 몇 년간 약 30%의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다. 조합원들은 회사 분할 이후 특정 사업부문이 매각되거나 폐쇄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참고자료1] 노동조합 공문

10. 회사는 신설법인이 생길 경우 사업축소나 외주화 등 없이 구성원들에게 고용보장 등을 약속하고 신설법인에서의 미래 사업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가.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혁준

주식회사 자유

문서번호 : 주식회사 자유 2017-인사-38

시행일자 : 2017년 9월 1일

수 신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 지회장

참 조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제 목 : (주)신자유 분할신설 관련 노동조합 질의에 관한 회신

1. 귀 노동조합과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귀 노동조합의 2017. 8. 23. 자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사업부문으로 하는 가칭 '(주)신자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은 관계법령, 회사 정관 등을 준수하며 인적분할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부품 제조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주)신자유로 이전될 것입니다. 회사는 인적분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4. 법인분리 시점은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신자유를 설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 (주)신자유의 경우 자동차부품 생산에 특화되어 관리/육성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현재 회사의 모든 부문들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회사는 물론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6. 분할 이후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현행과 같이 (주)자유 소속으로 남을 것이고,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신자유에 속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생산 부문의 약 1,000명 이상의 직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주)신자유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회사는 미래 사업계획에 맞춰 결원보충을 비롯한 인력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2] 회사공문

7. (주)신자유의 설립은 각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법에 의거 회사분할에 따라 이동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은 모두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된 근로계약들, 퇴직금 및 근속기간 등도 모두 승계될 것입니다. 끝.

주식회사 자유 대표이사 권대표

2016년 단체협약서

2016. 8.

주식회사 자유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자유지회)

전 문

주식회사 자유(이하 ‘회사’ 라 한다)와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2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보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권이 있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 (협약의 우선권)

이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규칙 또는 회사와 조합원간에 체결한 모든 협정이나 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 (협약의 준수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근로조건의 변경)

회사는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또는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과의 별도 협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7 조 (협약의 기준)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든지 저하시킬 수 없다.

제 8 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 회사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제 규칙, 규정을 단체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정하며, 취업규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고,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2. 조합 또는 회사가 이의 제정, 개폐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9 조 (협약의 효력)

1. 본 협약은 노동제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어도 법상 최저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 10 조 (보충협약)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법령의 개정 및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시 또는 노동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노사 일방이 갱신코자 할 때에는 보충협약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1.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이 요청할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 1항의 보충협약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한다.

(중략)

제5장 고용안정

제32조 (고용안정 유지)

①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 공장 또는 일부의 조업단축, 휴업, 휴무 등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경우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합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거하여 휴업, 휴무 등을 시행할 경우 적어도 법상 최저한도(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외주 및 용역 전환)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 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사의 합병, 양도, 이전 등)

회사는 합병, 양도, 이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간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승계의무)

회사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

(중략)

제6장 특별위원회

제 72 조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회사와 조합은 노사공동의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목적

회사와 조합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상호

협조하고, 회사는 노조원의 고용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회사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2. 대책위 구성

가. 회사 : 사장 포함 10명

나. 조합 : 지회장 포함 10명

단, 사장 또는 지회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3. 운 영

가. 분기별 1회 정기협의(노사 일방 요구시 임시회의 개최)

나. 고용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다음의 요인으로 고용관련 문제 발생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1) 경영상, 기술상으로 인한 고용관련 사항

2) 신기계, 신기술 도입(자동화), 작업공정의 변화(설비변경)에 따른 고용관련 사항

3) 용역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련 사항

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최대한 지원한다.

(중략)

제10장 단체교섭

제123조 (단체교섭의 요구)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일시 및 장소
2. 단체교섭 안건
3. 교섭인원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4 조 (특별단체교섭 요구)

회사와 조합은 특별단체교섭을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 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25조 (신속교섭의 의무)

회사와 조합 중 일방의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5일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제126조 (교섭위원)

1.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5인 내외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쌍방 대표자는 필히 교섭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결정권의 위임장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 원본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7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3조 (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2016. 8. 29.

주식회사 자유
대표이사 권대표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혁준

2018년 특별단체교섭 요구안

1. (주)자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특별요구

(주)자유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현재의 단일한 법인유지를 기본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회사의 각 부문별 역할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을 요구한다.

가. 연구개발 부문

- 1)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연구개발 확대
- 2) 영업이익의 20% 이상 연구개발 투자 요구

나. 생산부문

- 1) 각 공장 노후 설비 교체 요구
- 2) 전기차 주요 동력전달계부품 생산요구

다. 판매부문

- 1) 수출시장 다변화 요구
- 2) 국내 영업부문 영업소 폐지금지 요구

2. 무급휴직자 대책마련 특별요구

회사는 2017. 1. 23.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이 종료되는 2018. 2. 28.부터 배치전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무급휴직자들에게 적절한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식회사 자유

문서번호 : 주식회사 자유 2018-인사-2

시행일자 : 2018년 2월 3일

수 신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참 조 :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 지회장

제 목 : “(주)자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특별요구”에 대한 회사 입장

1. 귀 노동조합과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기원합니다.
2. 귀 노동조합은 지난 1월 21일, 1월 24일, 1월 27일, 2월 1일 각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전달합니다.
3. 귀 노동조합은 회사가 귀 노동조합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18년 1월 25일로 예정된 상견례 및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미 2018인사-1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귀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 내용은 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회사와 경영진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분할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5. 이상과 같이 회사는 귀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귀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분할계획 발표 이후 귀 노동조합에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분할 관련 협의를 요청해온 만큼 성실히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식회사 자유 대표이사 권대표

민주 투쟁

제 2018-10호 2018년 2월 24일

발행처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 | 발행인 나투쟁 | 홈페이지 <http://union.kr/liberty> |

단체교섭 회피 말고 당당하게 특별단체교섭에 나와라

회사분할은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 분할 저지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특단협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교섭을 회피하고만 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회사측은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회사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 특별단체교섭요구는 고용안정과 지속가능한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위력적인 파업을 통해 반드시 고용안정을 쟁취할 것이다.

회사분할 꼼수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회사의 분할 꼼수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회사의 꼼수는 회사분할 통한 구조조정이다. 회사가 분할되면 신설법인의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한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은 축소되고 외주화나 매각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분할 후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발톱을 숨기기 위한 꼼수다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분할은 무효다

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분할계획서를 요구하여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회사의 목적은 결국 분할 이후에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면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위력적인 파업을 통해 분할을 저지하자

회사분할은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분할은 효력이 없다. 회사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사측이 끝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면 노동조합은 위력적인 파업을 통해 분할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78 업무방해방조
피 고 인	1. 박사무 주거 울산 중구 자유로 1110-1 한마음빌라 101동 203호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행신동 1117-1 2. 송원조 주거 울산 동구 행복로 361-1 한마음빌라 302동 503호 등록기준지 전북 무주군 적성면 701 3. 권위로 주거 울산 북구 꽃가을로 1110-1 304동 507호(등촌동, 미호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북 상주시 탄현면 51 4. 윤사회 주거 울산 동구 마중로 1110-1 한마음빌라 201동 305호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손현동 971-1
검 사	나기소(기소), 이공판(공판)
변 호 인	범무법인 승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오승리
판 결 선 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 박사무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송원조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권위로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윤사회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박사무는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이하 “자유지회” 라고 한다) 사무장, 피고인 송원조는 자유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권위로는 자유지회 전지회장, 피고인 윤사회는 자유지회 연대부장이다.

자유지회의 부지회장인 조영리와 조합원 김투철은 (주)자유 이사회에서 승인된 분할 계획서에 따른 회사분할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2018. 3. 6. 06:00경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00 소재 자동차 부품 1공장(이하 “1공장” 이라고 함)에 설치된 높이 15m 가량의 송전철탑 중간 대기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치고 “단 한명도 못 보낸다. 회사분할 철회” 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점거하여,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2018. 3. 15. 14:00경까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위 송전철탑의 전원을 차단 하게 하여 1공장의 전원공급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참고자료] 업무방해방조죄 판결문(2018고단5678)

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조영리·김투철의 위 농성을 지지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송전철탑에 올라가 위로를 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범정진술
- 1. 증인 김목격의 범정진술
-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1. 퇴거요청공문, 철탑농성 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두섭 _____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피고인	행위 내용	비고
1	2018. 3. 6. 13:00	박사무	송전철탄 아래 천막 설치	
2	2018. 3. 7. 15:00	박사무	농성자들에게 연습장, 불펜 공급	
3	2018. 3. 8. 16:00	박사무	농성자들에게 랜턴 공급	
4	2018. 3. 8. 19:35	송원조	농성자들에게 방울토마토, 떡(가족방문) 공급	
5	2018. 3. 9. 14:00	윤사회	송전철탄 아래 지지집회 사회 ("조영리와 김투철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싸우자")	
6	2018. 3. 10. 11:00	송원조	매트리스, 검은 봉지 공급	
7	2018. 3. 11. 09:45	송원조	농성자들에게 신문, 휴대폰 배터리 공급	
8	2018. 3. 11. 14:00	권위로	송전철탄에 올라가 농성자 위로	
9	2018. 3. 12. 19:00	윤사회	송전철탄 아래 지지집회 사회 ("철탄에 올라가 있는 두 동지 덕분에 또 다른 연대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3차 투쟁을 이어가겠다")	
10	2018. 3. 7. ~ 3. 14.	송원조	매일 조식, 중식, 석식과 2리터 생수 2병씩 공급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노137 업무방해
피 고 인	1. 나투쟁 주거 울산 중구 자유로 1110-1 한마음빌라 301동 303호 등록기준지 경기 안양시 해방면 1117-1 2. 정명량 주거 울산 동구 행복로 361-1 한마음빌라 502동 203호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해량면 17 3. 이길상 주거 울산 북구 해방로 151-1 109동 1114호(서현동, 자유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남 김해시 동해면 76-7
검 사	장기소(기소), 소공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오승리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나투쟁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정명랑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길상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길상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나투쟁과 정명랑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길상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나투쟁, 정명랑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생략)

2) 양형부당

피고인 나투쟁, 정명랑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이길상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이길상은 주식회사 자유의 해고자이자 전국제조산업노조(이하 '제조산업노조'라 한다) 조직국장으로 자유지회에 제조산업노조 지침 등을 전달한 점, 2회에 걸쳐 농성지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접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지지 발언을 한 점에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길상이 업무방해의 공모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이길상의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이길상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업무방해 방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길상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나투쟁, 정명량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4.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이길상의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제조산업노조 울산지부 자유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018. 3. 3. 07:00경 주식회사 자유 1공장 '등속조인트'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자유지회는 2018. 3. 3. 09: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공장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5. 15:00경까지 약 3일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등속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조인트를 생산할 수 없게 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이길상은 2018. 3. 3.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달 4. 13:00경과 19:00경에 개최된 1공장 정문 앞 집회 또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하였으며, 2018. 3. 4. 15:00경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하였고, 같은 날 제조산업노조 공문을 자유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길상은 자유지회 및 그 조합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2018. 3. 3. 07:00경부터 2018. 3. 5. 15:00경까지 3일간 주식회사 자유 1공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자유의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길상이 이 사건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암묵적 의사연락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중략)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이길상의 행위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 이길상이 2018. 3. 4. 13:00경과 같은 날 19:00경 2회에 걸쳐 개최된 주식회사 자유 1공장 정문 앞에서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연 사실, 2018. 3. 4. 15:00경 등속조인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자유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히 인사하고 농성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뿐인 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이길상에게 자유지회의 불법과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이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증인인 000은...(중략)... 피고인 이길상이 어떤 방식으로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문과 추측으로 진술하여 위 000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길상이 자유지회의 불법과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5. 양형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6. 결론

(생략)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의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나투쟁 : 생략

나. 피고인 정명량 : 생략

다. 피고인 이길상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방해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나투쟁, 정명량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길상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강경

피고인 이길상 : 형법 제32조 제2항(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중범)

1. 경합범 가중

생략

1. 작량감경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생략

1. 노역장 유치

생략

1. 가납명령

생략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나투쟁, 정명량의 주식회사 자유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생략

2. 피고인 이길상의 업무방해방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생략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길상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유지회 및 조합원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위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자유지회 임원들은 제조산업노조 조직국장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이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길상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데다가, 피고인이 길상은 비록 현재는 자유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지회 간부 출신으로 자유지회 창설에서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자유지회 활동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이고 2009년 정리해고 반대투쟁 때 자유지회 송전철탑에 올라가 247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조합활동의 구심점이 되어 자유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런 지위에 있는 피고인 이길상이 i) 2018. 3. 3. 13:00경과 같은 달 4. 13:00경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자유 정문 앞에서 1공장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ii) 2018. 3. 4. 15:00경 등속조인트 생산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iii) 2018. 3. 4. 18:00경 제조산업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과 관련한 공문 등을 자유지회 등에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이길상의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방조죄를 유지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섭 _____
	판사	정공명 _____

[참고자료8] 업무방해죄 판결문(2018노137)

판사 백정대 _____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사 건 울산2018조정12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자유지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노동조합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조정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00번지 00빌딩 3층
위원장 정혁준

사용자 주식회사 자유
울산 동구 자유로 000번지
대표이사 권대표

결정일 2018. 2. 23.

우리 위원회는 위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교섭에 의하여 합의의 여지가 없어 발생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2.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과 주식회사 자유는 조정 종료 후에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자료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이 유

(생략)

울산2018조정12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자유지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2018년 2월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윤 0 0

근로자위원 송 0 0

사용자위원 류 0 0